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실시 및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공포, 2023. 6. 22. 시행 예정)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 종사 요양보호사에 보수교육 의무 부과(제11조의2 신설)

나.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절차 마련

1) 영상정보 보관시설 마련 등 안전성 확보 의무 부과(제14조의2 신설)

2)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의무 위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별표 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내용·기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2.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조치
4.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의 위반행위란 중 나목과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나목에서 카목을 각각 라목에서 파목으로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 제2항제1호			
1) 법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법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50	100	150
3) 법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50	100	150
4) 법 제3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25	50	75
다.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 제2항제2호	50	100	150

부 칙

제14조2·제14조의3·제14조의4,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의2(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u>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내용·기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u>제14조의2(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u>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33조의 3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2.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u>제14조의2</u> · <u>제14조의3</u> (생략)	<u>3.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조치</u> <u>4.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u> <u>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u>제14조의3</u> · <u>제14조의4</u> (현행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과 같음)
---	---